

법인간 공동사업 관련

Q

다음의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 법인간 공동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건가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대표자의 명의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2.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와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A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므로, 법인간 공동사업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사업의 주체가 2이상의 각 법인이므로, 당연히 법인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Q

질문(1)

- 가. 16기 말에 선수수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나, 전액 16기 수익으로 인식함.
- 나. 21기에 문제를 인식하고, 남은 수익 인식기간 만큼의 수익을 선수수익으로 수정하는 분개를 하고자 함.
- 다. 16기 말에 수익으로 인식한 총 액을 100원이라 하고, 1년에 10원씩 수익인식하는 건 이라면, 21기 수정분개 시 중대한 오류라고 가정할 때, 올바르게 회계처리 했으면 17~20기에 기간수익을 인식하여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해당기간 미처리된 수익인식금액은 제외하고 21기 당기와 이후 금액만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월이익잉여금 60원 / 수익 10원

/ 선수수익 50원

질문 2) 중대한 오류이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중대하지 않을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걸로 하는데, 여기서 중대한 오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금액의 기준인지, 아니면 손익의 영향을 주는 것인지 등

A

1.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2.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수 있는 오류로 기업회계기준에는 금액기준 등이 있지는 않으며, 법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사유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특별징수분 근무지역별 납부 문의

- Q** 현재 사업장이 임차한 건물에서 근로자 1명이 근무중입니다.
해당 경우 국세는 본점에서 납부하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본점 관할 구청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건지,
실제 근무하는 지역(임차한건물)의 관할 구청에 납부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이므로 특별징수 의무자의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면 됩니다.

매출 취소 문의

- Q** 당사는 A사로 매출했던 아이템을 20년 11월, 21년 3월에 돌려받았고, 당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금은 받지 않고 미수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매출 취소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데, 6월에 매출 취소한다면 어떠한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실제로 매출취소가 된 거래에 대해 매출취소 회계반영한다고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반영분도 수정하여 신고하면 되며, 역시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험료 계산서발행 가능여부

- Q**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A업체와 당사와 건축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에 A업체에서 건설공사중 인 공사에 지진태풍홍수등에 관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A업체에 당사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청구하고자 하는데
질문1.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 A** A업체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해당 보험료를 귀사가 우선 납부후 A업체에 청구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고 입금증 주고 받으면 됩니다.